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용범 의원]

의안 번호	71

발 의 년 월 일 : 2014. 8. 22.
발 의 자 : 이용범·박승희·신영은 의원
(찬성자 5 인)

1. 주 문

○ 인천AG조직위원회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체결한 마케팅권리 양도 협약에 따라 OCA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심사하여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제경기대회의 마케팅 권리를 OCA에서 조직위원회가 인수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는 OCA에 인수금을 지불하고 마케팅 권리를 인수하였음.

○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OCA의 소득(인수금)에 부과하는 과세는 OCA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 OCA헌장 및 개최 도시인 우리 시와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해서 세금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OCA대신 조직위원회에서 약 233억원의 인수금을 대리 납부해야하는 상황임.

○ 이에 2013년 12월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년 2월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조속히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마케팅 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임.**

3. **이 송 처**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 **첨　　부** :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 **참고사항** [별첨]

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나. 마케팅권리 사업구조 및 OCA 면세관련 규정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경기장의 국고지원 문제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과 성원으로 각종 난관을 극복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온 힘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인천광역시는 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 문제로 인하여 또 다시 크나큰 역경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제경기대회의 광고·방송·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권리를 OCA에서 조직위원회가 인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OCA와 체결한 마케팅권리 양도협약에 의거 인수금을 지불하고 마케팅권리를 인수하였습니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원래 OCA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가로서 OCA의 소득(인수금)에 대한 과세는 OCA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OCA헌장 및 개최도시와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해서 면세를 받고 있어 OCA소득(60.4백만 달러)에 대한 법인세 140억원과 부가가치세 93억원을 합한 총 233억원의 세금을 조직위원회가 대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12월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년 2월 해당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이대로라면 대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국제경기대회의 마케팅 방식이 OCA 대행사에서 조직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대두된 사항으로 조직위원회의 성격상 과거 세금을 낸 전례가 없다는 점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큰 행사인 만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경기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법률 개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8월 5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신 만큼 과거 치러졌던 그 어느 경기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대회운영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45억 아시아인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케팅권리에 대한 감면 법안인「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8.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참고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제경기대회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 면제(안 제104조의2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제경기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마케팅권리를 인수하기 위하여 국제경기기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부가가치세의 면제(제106조) <신 설>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추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마케팅권리

* 2013. 12. 6. 발의

□ 마케팅권리 사업구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 권리 관련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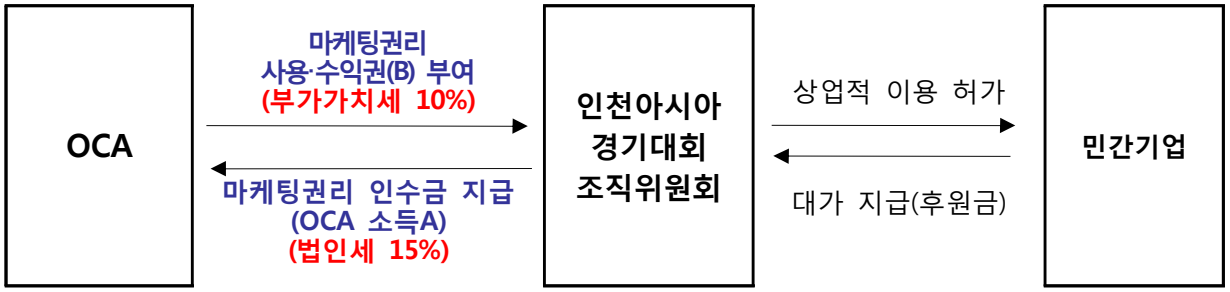

◈ **대가배분(A)과 법인세 :** 외국법인인 OCA가 마케팅권리(지적재산권)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내국법인인 조직위원회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은 **인수금(A)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OCA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 **사용수익권(B)과 부가가치세 :** OCA가 조직위원회에 마케팅 권리 사용·**수익권(B)을 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조직위의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 의무** : 국제경기기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마케팅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 OCA 면세관련 규정

◈ OCA헌장 제66조의 세칙5
* AGOC(조직위)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수익의 면세를 보장한다.**

◈ 개최도시계약서('07.4월) 제33조
* (중략) AGOC(조직위)는 대회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이 면세임을 확인해야한다.**

◈ 마케팅 수익 면세 보증서(인천시, '07.4월)
* (중략) 조세법 개정 또는 2014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회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마케팅 수익에 대한 면세를 추진할 것이며(이하 생략)